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6. 25.

엄태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6.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17회 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 (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제418회 국회(정기회)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11.25.)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9차 정무위원회 (2024. 12. 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엄태영의원)

현행법령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두면서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천만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가 2001년에 정해진 이후 20여년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7배가량 상승하였다는 점, 해외의 예금보험금 한도(예를 들어, 미국은 25만달러, 일본은 1천만엔, 영국은 8.5만파운드)를 비교하였을 때 현행 한도금액이 비교적 낮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예금에 대한 보호 한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주기적으로 그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5년마다 의결을 거쳐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최 병 권)

가. 예금보험금 한도 증액(5천만원 → 1억원 이상)

1) 예금보험금 최저한도를 1억원으로 법률에 설정

□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법률로 최저한도를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현 행	엄태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후단 신설>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이 경우 예금보험위원회는 5년마다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종별로 보험금의 한도를 달리 정하여야 한다.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는 최소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보험금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

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등[1]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2]가 발생한 경우 대신 지급하는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3]

□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예금보험금은 동법 제32조[4]에 따라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채무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그 최고 보호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8조제7항[5]은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으로 보호한도를 규정하되,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

---

1) 예금·적금·부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증권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수입보험료 등(「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

2)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

3) 「예금자보호법」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다르게 한다.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제34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

4) 「예금자보호법」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제31조에 따라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5)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⑦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예금등 채권의 경우: 해당 목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각각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 이 경우 가입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나. 다음의 예금등 채권을 합산한 예금등 채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예금등 채권
      2)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0조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의 예금등 채권 중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와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
      3)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1조에 따른 연금저축의 예금등 채권 중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와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
   다.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가목 및 나목의 예금등 채권은 제외한다) 중 보험금(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보험금은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예금등 채권을 제외한 예금등 채권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과 제1호라목의 예금등 채권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이 경우 계좌보유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업퇴직연금은 별도 보호한도(각 5천만원)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참고로, 개별 법률에 따라 자체 기금을 운용하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보호 한도 역시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으로 동일함.

□ 현행법 제32조제2항[6]은 예금보험금 한도 설정 시에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최초로 5천만원 한도를 설정한 2001년도와 2023년도를 비교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1,493만원에서 4,334만원으로, 예금등의 규모는 550조원에서 2,947조원으로 각각 2.9배, 5.3배 증가하였음.

[표 1] 1인당 GDP 및 부보예금 규모 변동

구 분	1인당GDP(만원)	부보예금(조원)						
		은행	금융투자	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합 계
				생명	손해			
2001년	1,492.5	422.2	11.2	77.1	17.5	2.2	19.7	550.2
2023년	4,333.8	1,883.9	66.9	652.5	238.9	4.1	100.3	2,946.6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금 한도는 2001년 이후 5천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보호 필요성이 높은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7] 등의 보호한도를 별도로 부여하는 정도의 변화만 있었음.

6) 「예금자보호법」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7)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

[표 2] 예금보험금 한도 변경 연혁

구 분	은행	보험	금융투자	종합금융	저축은행
'97.11. 이전	2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97.11.~ '98.7.	전액 보호 (외환위기 대응)				
'98.8.~ '00.12.	- '98.8.이전 가입: 전액 보호 - '98.8.이후 가입: 원금 2천만원 이하 시 원리금 2천만원까지 보호, 원금 2천만원 초과 시 원금만 전액보호				
'01.1.~ '15.2.	**5천만원** (금융시장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부분보장제도로 환원)				
'15.2.~ '23.10.	**5천만원**, 퇴직연금(DC, IRP) 별도 보호한도 적용				
'23.10.~ 현재	**5천만원,**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별도 보호한도 추가 적용				

(자료: 금융위원회)

□ 또한, 주요국 은행업권의 1인당 국내총생산액 대비 예금보험금 한도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1.2배)는 일본(2.1배), 영국(2.2배), 미국(3.1배) 등에 비해 다소 보호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주요국의 은행업권 예금보험금 한도

구 분	1인당 보호한도	1인당 GDP IMF 2023 추정치주)	보호한도 비율	비고	
한국	5천만원	₩ 43,337,610	1.2배		
스위스	CHF 10만	CHF 90,220	1.1배		
캐나다	CAD 10만	CAD 72,285	1.4배		
일본	¥ 1천만	¥ 4,749,433	2.1배		
싱가포르	S$ 10만	S$113,778	0.9배		
영국	£ 8.5만	£ 39,487	2.2배	'08년 금융 위기로 인상	기존 £5만 (1.3배)
미국	USD 25만	$ 81,632	3.1배		기존 USD 10만 (1.3배)
호주	A$ 25만	AUD 98,423	2.5배		

주: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 2024
(Gross domestic product per capita, current prices (national currency))

(자료: 금융위원회)

□ 개정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및 예금등의 규모 변화 등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상황을 반영하여 예금보험금 한도를 증액함으로써 보다 충실히 예금자를 보호하고 예금등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임.

□ 그러나, 예금보험금 한도 증액과 관련하여 금융자산이 많은 일부 계층에 법률 개정의 편익이 한정되는 반면,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업권의 부담이 금리 인상 경로 등을 거쳐 전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이와는 달리 상당수의 예금자들이 예금보험금 한도 내에서 여러 예금기관에 분산 예치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예금보험금 한도 상향은 금융소비자 편익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8)]

□ 금융위원회는 ① 현재도 예금자의 90~95%를 보호하도록 한 국제권고 수준을 충족[9)]하여 대부분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② 금융시장에의 영향(자금이동) ③ 금융회사·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험금 한도 증액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예금보험금 한도를 증액하는 경우에도 그 한도의 최소 수준을 법률로 명시하기보다는 경제·금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현행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8)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3년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필요」, 2024.2.27.
9) IADI(국제예금보험기구): 예금자(90~95%)를 보호하되, 예금액의 상당 부분이 비보호되는 수준의 보호한도 설정 권고(Enhanced Guidance for Effective Deposit Insurance System, '13.3월)

[표 4]예금액 5천만원·1억원 이하 금융소비자 비중

(단위: 만명, 2023년 말 기준)

구 분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	상호저축은행	합계
전체 예금자 수		19,776	6,249	4,232	7,545	20	511	38,333
5천만원	예금자수	19,327	6,232	3,972	7,503	19	497	37,550
	비율	**97.7%**	**99.7%**	**93.8%**	**99.4%**	**92.9%**	**97.3%**	**98.0%**
1억원	예금자수	19,583	6,243	4,160	7,536	20	509	38,050
	비율	**99.0%**	**99.9%**	**98.3%**	**99.9%**	**98.0%**	**99.7%**	**99.3%**

(자료: 금융위원회)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예금보험금 한도 증액은 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변화를 반영한 보다 두터운 예금자 보호, 예금등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 제고, 분산 예치 불편 완화 등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② 법률 개정의 편익이 금융자산이 많은 일부 계층에 한정되고 그 부담은 전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일시적 자금이동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10] 유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2) 실 지급 예금보험금 한도의 결정주체

□ 개정안은 법률로 예금보험금의 최저 한도를 1억원으로 규정하되, 실제 지급되는 예금보험금의 한도는 예금보험위원회 등이 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10) 금융소비자는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하던 예금등을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주는 금융회사로 이동시키고, 이를 예치받은 금융회사는 고위험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금융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

현 행	엄태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대통령령으로 결정 (제32조제2항)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 이 경우 예금보험위원회는 5년마다 의결을 거쳐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달리 정해야 함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결정 ※ 결정 주체 명시 없음

□ 현재 예금보험금은 현행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11]에 따라 예금자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채무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 엄태영의원안은 1억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예금보험금 한도를 설정하되 예금보험위원회가 5년마다 보험금 한도를 달리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예금보험금의 최저한도(1억)는 법률로,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최종적인 실 지급 한도는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또한, 신영대의원안은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그 한도 결정 주체는 조문상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여 향후 심사과정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

11) 「예금자보호법」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제31조에 따라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개정안에 따를 경우, 실제 예금자에게 지급되는 예금보험금의 한도는 예금보험위원회 등이 법령상 한도[12]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법적 안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예금보험위원회 등이 예금보험금 한도를 다시 설정할 때마다 부보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도 함께 변경되어야 하므로,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금보험료율도 개정되어야 함. 또한, 예금자 역시 보험금 한도 변화 시마다 보험금 범위에서 예금등을 재예치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예금보험금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한도는 법규성 있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 역시 예금보험금 한도는 금융회사·소비자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현행과 같이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12) 엄태영의원안: 최저한도(1억원) 및 최고한도(대통령령으로 설정)
신영대의원안: 최저한도(1억원)

나. 예금보험금 한도 설정 방식

1) 금융업종별 보호한도 차등화

□ 개정안은 금융업종별로 예금보험금의 한도를 달리 설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현 행	엄태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생 략) ② (전단 생략) <후단 신설>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단 생략) 이 경우 예금보험위원회는 5년마다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종별로** 보험금의 한도를 **달리 정하여야 한다.**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본문 생략) 다만, 이 경우 보험금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현행 시행령은 금융업종별 구분 없이 전 업종에 대하여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의 예금보험금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모든 금융업종의 예금보험금 한도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의 부정적 효과[13]를 우려하여 금융업종별로 그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 예금수취기관인 은행 및 저축은행은 동일한 보험금 한도를 적용하되, 금융투자와 보험 업종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음.

13) 위험부담의 업권별 형평성 문제, 동등 상향 시 상호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이동 개연성 등

[표 5] 주요국의 금융업종별 보험금 한도

구분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예금수취기관 (은행·저축은행)		5천만원	$25만	£8.5만	¥1천만
금융투자		5천만원	$50만 예치금은 $25만	£8.5만	¥1천만
보험	생명	5천만원	(사망보험금)$30만** (해약환급금)$10만** (건강보험)$50만 등**	(장기·연금보험)청구권 100%	책임준비금 대비 90%
	손해	5천만원	(일반보험)$30만** (산업재해보험)전액**	(의무보험)100% (기타보험)90%	(사고보험금)90~100% (해약환급금)80~90%

* 미국·일본은 업권별 보호기구가 상이

** 보호한도는 州별 보험업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州별로 상이하며, 해당 기준은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에서 제시한 표준법안(Model Act) 상의 보호한도를 의미(Model Act는 구속력이 없음)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업종과 관계없이 예금보험금 한도를 일률적으로 상향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상호저축은행으로 예금등이 이동할 수 있고, 이는 고위험 분야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 시장환경 악화 시 저축은행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14]가 있으므로,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화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임.

□ 우리나라도 1997년 11월 이전에는 보험업종 5천만원, 그 밖의 금융업종 2천만원으로 예금보험금 한도를 차등하였는데, 외환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전액보호제 이후 2001년 부분보장제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전체 업종에 대해 5천만원의 보험금 한도를 공통 적용하게 되었음.

- 당시 보험금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차등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① 예금보험제도의 기본취지가 소액예금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인 만큼 금융

14)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3년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필요」, 2024.2.27.

업종별로 소액예금자의 기준이 다르다 보기 어렵고, ② 보호한도를 차등할 경우 보호한도가 높은 금융업종으로의 자금이동유인이 발생하여 자금흐름의 왜곡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업종 구분 없이 예금 보호 한도를 5천만원으로 설정하였음.[15] 즉, 차등 보호로 인한 예금자간 형평성 문제와 자금흐름의 왜곡 우려 등으로 '차등 보호'에서 '공통 보호' 방식으로 변경된 것임.

[표 6] 우리나라 예금 보호제도의 변화

구 분		은행	보험	금융투자	종합금융	저축은행
'97.11. 이전	**차등 보호**	2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97.11.~ '00.12.	**전액 보호**	전액 보호 (외환위기 대응)				
'01.1.~	**공통 보호**	5천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이와 같은 연혁을 고려할 때, 예금보험금 한도의 금융업종별 차등화는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이동으로 인한 금융 리스크 확대 가능성과 차등 보호로 인한 예금자간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금융위원회는 예금수취기관인 은행 및 저축은행 간에는 보호한도를 동등하게 운영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은행·금융투자·보험 업권의 보험금 한도를 차등화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의 행태 변화[16]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5)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예금 부분보장제도 시행방안」, 2000.10.17.

2) 5년 주기로 예금보험금 한도 재설정

□ 개정안은 5년 주기로 예금보험금 한도를 달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엄태영의원안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생 략) ② (전단 생략) <후단 신설>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현행과 같음) ② (전단 생략) 이 경우 예금보험위원회는 **5년마다**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종별로 보험금의 한도를 달리 **정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5년 주기로 예금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예금보험금 한도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액, 부보예금액 및 경제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적정 예금보험금 한도를 조정해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임.

□ 다만, 엄태영의원안은 보험금 한도의 적정성 재검토를 넘어, 5년 주기로 그 한도를 다시 설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경우 주기가 도래할 때마다 한도 인상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보험금 한도 변경에 따라 예금보험료 역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업권 간 자금 이동에 따른 유불리 등으로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16) ① (소비자) 보호한도가 높은 업권으로의 자금이동 가능성 및 규모,
② (금융회사) 보호한도가 높아진 업권의 영업행태 변화 (금리·보험료 등 인상) 등

다. 부칙

□ 개정안 부칙은 개정규정의 효력 발생일과 그 적용 시점을 규정하려는 것인데, 엄태영의원안은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소급하여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이미 지급받은 자로서 그 보험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더라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이하 "미수령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수령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엄태영의원안의 부칙은 예금보험금 한도 상향으로 인한 혜택을 보험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그러나, 가장 최근의 보험금 지급개시일은 2014년 5월 7일이고, 현행법 제31조제7항[17]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는 5년이므로, 현재

17) 「예금자보호법」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 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금자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7] 2011년 ~ 2023년 예금보험금 지급개시일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보험금 지급개시일	2011-03-25 2011-08-31 2011-09-08 2011-10-27 2011-11-30	2012-01-10 2012-01-18 2012-02-17 2012-09-10 2012-10-22 2012-11-19 2012-12-31	2013-02-18 2013-04-15 2013-11-04 2013-12-30	2014-05-07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금융위원회는 종전 한도를 초과하여 상향된 보험 금액을 소급청구할 수 있게 할 경우 법적 안정성 및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험사고에 대해서는 제34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예금자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제3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준현위원)

○ “위원회 대안”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대안반영폐기).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